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기준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1. 신청 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의 할부금융 또는 금융리스 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당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당사의 채무조정 운영 대상이 아닌 경우
- 그 외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관련 서류

신청 방법

- 당사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1577-2320) 통한 신청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채무조정 요청 시 당사 채무조정 담당자가 해당 양식을 요청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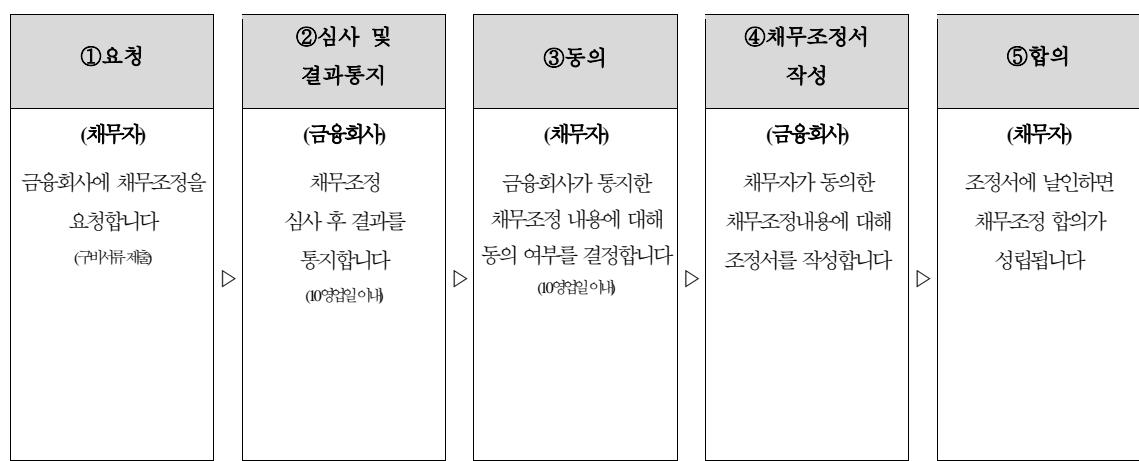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기타 채무조정 관련 필요 서류

3. 채무조정 내용

고객님의 경제적 상황과 이용 중인 대출상품에 따라,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적용

- 1) 납입일 유예
- 2) 만기 연장
- 3) 원금 또는 이자 감면
- 4) 분할납부

4. 채무조정 절차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적 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대상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

-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대상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 내용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대상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 내용 :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6.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합의된 채무조정이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해제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됩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